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다.

⑤ (생략)

第75條의2(災害등에 대한 補償) ①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第76條(兵役義務不履行者에 대한 制裁)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

⑤ (현행과 같음)

第75條의2(災害등에 대한 補償) ①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

②·③ (현행과 같음)

第76條(兵役義務不履行者에 대한 制裁)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

용할 수 없으며, 재직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②·③ (생략)

第83條(戰時特例) ① (생략)

②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역중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현역병입영 대상으로의,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은 병력동원소집대상으로

의 전환 <단서 신설>

오전부터 ① (생략) ...

1·2. (현행과 같음)

3. 군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사회복지요원의 복무

②·③ (현행과 같음)

第83條(戰時特例) ① (현행과 같음)

②

1. ~ 3. (현행과 같음)

4. 다만, 제43조의6 또는 제43조의9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되거나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연기 및 징집·소집연기의 정지 <단서 신설>

5의2. ~ 9. (생략)

③ (생략)

第84條(身上移動通報不履行 등) ① (생략)

②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

<신설>

5. -----

----- 다만,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를 신청한 자로서 그 심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의2.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第84條(身上移動通報不履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주 또는 제43조의12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장이 제40조·제43조의12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③ (현행과 같음)

제86조의2(양심적병역거부자 인정의 허위 신청 등) ① 사회복지요원에 편입될 목적으로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빙자하여 제4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인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요원에 편입된 사람

2. 신청인을 대리하여 제43조의4의 규정에 따른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은 사람

③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第88條(入營의 기피)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 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 유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공익근무요원소집은 3일</u>	2. <u>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 요원의 소집</u>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第89條(公益勤務要員의 代理服務) <u>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 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u>	第89條(公益勤務要員의 代理服務) <u>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 원</u> -----
第89條의2(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 이탈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이 경우 복무기간의 산입 은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第89條의2(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 이탈등) ----- ----- ----- ----- -----
1. <u>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u>	1. <u>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u>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정 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 하여 통산 4회이상 경고처분된 사람	<u>요원</u> ----- ----- ----- -----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第91條(虛偽證明書등의 발급) <u>공무 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 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 나 이 법에 복무기간을 단축시 킬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증명 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 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이하의 자 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u>	第91條(虛偽證明書등의 발급) <u>공무 원·의사·치과의사 또는 종교 인 등으로서-----면제·변경 또 는 연기</u> ----- ----- ----- ----- ----- -----
第92條(專門研究要員등의 編入 및 從事義務違反등) ①·② (생략)	第92條(專門研究要員등의 編入 및 從事義務違反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사회복지시설(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장(사회복지 시설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u>

<신 설>

이 사회복지요원을 제43조의8의
규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지
정한 복무분야와 복무시설외의
분야와 시설에 종사하게 한 때에
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
무원의제)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
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의안
번호

제 2004-11-19

노회찬 · 강기갑 · 권영길

이영순
이순영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

제안 이유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병역법 또는 군형법
의반으로 처벌되는 자가 양심률 뿐만 아니라 인성률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조화되지 않아 양심의 자유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
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대체복무제도를 선
입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1.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 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 지

안안별표인 **안안** **안안**

兵役法中改正法律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2
----------	-----

발의연월일 : 2004. 11. 19.

발 의 자 : 노회찬·강기갑·권영길
단병호·심상정·이영순
조승수·천영세·최순영
현애자 의원(10인)

제안이유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적 확신을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병역법 또는 균형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자가 양산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조화되지 않아 양심의 자유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지

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적 단체 또는 시설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또는 여성 등의 보호·치료·요양·훈련·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 또는 소방·의료·재난 또는 구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안 제2조제1항제9호의2).

나. 대체복무요원의 판정을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를, 지방병무청에 지방대체복무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3조의2).

다.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교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공무원이었던 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함(안 제33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라.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지방위원회의 기각 및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사, 다음해의 대체복무요원의 예상 소요 인원·복무분야·복무형태·대체복무시설의 종류에 대한 결정,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33조의4).

마. 중앙대체복무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음(안 제33조의5제1항, 제4항).

바. 중앙대체복무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을 정함(안 제33조의6).

사. 위원이 신청인이거나 신청인과 제척관계에 있는 등의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척되며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33조의7 및 제33조의8).

아. 지방대체복무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대체복무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함(안 제33조의9).

자. 지방대체복무위원회는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판정, 예비군에 대한 대체복무신청의 판정, 대체복무시설의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33조의10).

차.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시에 대체복무제도의 취지, 절차, 기간에 대해서 고지의무가 있음(안 제33조의11).

카.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려고 하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대체복무위원회에 대체복무신청을 하여야 하고,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복무 중에 대체복무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중앙대체복무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영 또는 소집은 연기됨(안 제33조의12제1항 내지 제3항).

타. 지방대체복무위원회 및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33조의13 및 제33조의15제4항).

파. 지방대체복무위원회 및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결정은 서면으로 하
되, 기간·방식에 위배된 경우에는 각하, 이유없을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인정시에는 대체복무분야를 복수로 지정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함(안 제33조의14제1항내지제4항 및 제33조의15제4항).

하. 복무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현역병과 보충역에 대해서는 짐총이
수반되지 않는 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육소집의 면제를
결정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간주함(안 제33조의14제4항 단서, 동조제
5항).

거.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각하와 기각결정에 대해서 재심사하고 재
심사 결과에 따라 지방대체위원회와 같이 각하, 기각, 대체복무요
원편입결정 등을 함(안 제33조의15).

너. 대체복무요원편입결정을 받은 자는 대체복무분야를 선정할 수
있음(안 제33조의16).

더.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시설에서 사회복지관련업무 또는 공익
관련업무를 행하되 국군의 업무, 경비교도대의 업무, 전투경찰대
의 업무, 기타 이에 준하는 대인용무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수행하
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됨(안 제33조의18).

러. 대체복무시설은 지방위원회가 정하되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19).

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육군현역병의 1.5배로 하고 그 소집
을 마친 때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한다(안 제33조의22제1항, 제4

항).
버. 대체복무요원은 단체숙박활동을 하며 수가 적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만 그 예외를 인정함(안 제33조의23제3항).

서.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요원이 되었다는 혐의로 형의 선
고를 받은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
집함(안 제33조의25제2항, 제89조의2제1호, 제4호).

어. 대체복무요원은 병력동원소집에서 제외하고, 전시근로소집대상
에 포함시키며, 병력동원훈련소집에서 제외하나, 병력동원훈련업무
에서 제외된 대체복무요원은 그 기간동안 대체복무시설 등에서 복
무하여야 함(안 제44조, 제53조제1항제3호, 제49조제2항).

저. 대체복무요원을 마친 자는 교육소집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
동안 대체복무시설 등에서 복무하여야 함(안 제55조제1항 내지 제3
항).

처. 학생군사교육을 받은 자가 대체복무요원이 된 경우 현역과 공익
근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기간을 단축함(안 제57조제1항).

커.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가 부모나 형제·자매 중 전사자
가 있거나 부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현역과 공익근
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함(안 제63조제2항).

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의무면제 나이를 현역병입영의무 또는 공익
근무요원소집의무와 같이 31세부터로 함(안 제71조제1항).

피. 다른 현역이나 보충역과 동등하게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도 복학을 보장하고, 순직이나 공상시 국가의 보상의무를 규정하며, 대체복무불이행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함(안 제73조, 제75조의2 제1항, 제76조제1항제3호).

허.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대체복무요원은 현역병 입영대상이나 병력동원소집대상이 되지 아니함(안 제83조제2항제4호 단서).

고. 대체복무시설의 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신상이동통보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4조제2항).

노. 대체복무요원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대체복무요원을 대리하여 복무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88조제1항제2호, 제89조).

도. 대체복무요원이 직무에서 8일 동안 이탈(단체숙박시설이탈포함)하거나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통산 4회 이상 경고처분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89조의2 제1호, 제4호).

로. 종교인이 대체복무요원으로 판정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증명서를 발부해 준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

91조).

모.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시행함(안 부칙 제1조).

보. 이 법 시행 당시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자, 병역법제88조 또는 군형법제44조를 위반한 자,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 보충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법 시행일 60일 이내에 대체복무신청 가능(안 부칙 제2조).

소.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병역법제88조 또는 군형법제44조를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한다(안 부칙 제4조제1항).

오.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대체복무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은 정지되고, 대체복무요원편입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한다(안 부칙 제4조제2항, 제3항).

조. 예비군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 대체복무를 인정함(안 부칙 제5조).

兵役法中改正法律案

兵役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대체복무요원이라 함은 제33조의14제4항 및 제33조의15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복무요원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적 단체 또는 시설(이하 "대체복무시설등"이라 한다)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또는 여성 등의 보호·치료·요양·훈련·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이하 "사회복지관련업무"라 한다) 또는 소방·의료·재난 또는 구호 등의 업무(이하 "공익관련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산업기능요원"을 "산업기능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사람"을 "사람(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한다.

제5장에 제1절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제33조의2(대체복무위원회) 제2조제1항제9호의2에 정한 대체복무요원의 판정을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지방병무청에 지방대체복무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3조의3(중앙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자로서 철학·종교학·심리학·법학·사회학 또는 정치학 등을 전공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 종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정한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4. 4급 이상의 관계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임명한다.
-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⑤중앙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4(중앙위원회의 업무)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지방위원회의 기각 및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사
2. 제33조의19제1항에 규정한 다음해의 대체복무요원의 예상 소요인원·복무분야·복무형태·대체복무시설의 종류에 대한 결정
3.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제안

제33조의5(중앙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 ①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③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④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33조의7(위원의 제척)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신청인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신청인과 친족·호주·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신청인의 참고인으로 된 경우

제33조의8(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의9(지방위원회의 구성) ①지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제33조의3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한다.

④제33조의3제4항 내지 제5항, 제33조의5 내지 8은 지방위원회에 준용한다.

제33조의10(지방위원회의 업무)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

행한다.

1. 제33조의12제1항, 제2항에 규정한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판정
2. 기타 이 법이 규정한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판정
3.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4제1항에 규정한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판정
4. 제33조의19제2항에 규정한 대체복무시설의 지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수행

제33조의11(고지의무) 지방병무청장은 제11조에 정한 징병검사시에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의 취지, 대체복무신청절차 및 기간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제33조의12(대체복무신청) ①제1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 중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징총이 수반되는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대체복무신청인”이라 한다)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체복무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산하의 지방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대체복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현역병(제21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복무 중인 자도 제1항에 정한 기간에 불구하고 대체복무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복무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중앙위원회의 재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입영 또는 소집은 연기된다.

1.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현역병입영
2. 제22조제1항에 규정한 현역병입영
3. 제29조제1항에 규정한 공익근무요원의 소집
4. 제55조제1항에 규정한 교육소집(공익근무요원에 한한다)

제33조의13(조사) ①지방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영대상자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입영대상자등 본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는 일
2. 입영대상자등 본인 또는 참고인이 초지하는 문서·장부·물건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
3.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는 일
4.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
5.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②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의14(결정) ①결정은 서면으로 한다.

②지방위원회는 대체복무신청인의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1. 신청이 제33조의12제1항에 정한 기간을 지난 경우
2. 신청이 제33조의12제1항에 정한 방식에 위배된 경우
- ③지방위원회는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
- ④지방위원회는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하기로 결정(이하 “대체복무요원편입결정”이라 한다)하고, 신청인의 희망·자질·학력·적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체복무분야를 복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신청인이 현역병 또는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복무 중인 자로써 복무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집총이 수반되지 않는 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결정(이하 “비집총복무결정”이라 한다)하여야 하고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의 면제를 결정(이하 “교육소집면제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⑤제4항 단서에 의한 비집총복무결정 또는 교육소집면제결정을 받은 자도 이 법에 의한 대체복무요원으로 본다.
- ⑥제1항의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⑦지방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3조의15(재심사) ①지방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신청인

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정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1. 제33조의14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정한 기간을 도과하거나 방식에 위반한 경우
3. 제33조의14제4항에 정한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
- ④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내린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 ⑤제33조의13, 제33조의14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은 중앙위원회에 준용한다.

제33조의16(대체복무분야의 선정) ①제33조의14제4항 및 제33조의15제5항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 편입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체복무분야를 선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정한 기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분야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의17(대체복무요원의 편입) 제33조의14제4항, 제33조의15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복무요원편입결정을 받은 자는 대체복무요원으

로 편입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의 병적은 보충역으로 변경된다.

제33조의18(대체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및 대체복무시설)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시설등에서 사회복지관련업무 또는 공익관련업무를 보조·지원한다. 다만, 대체복무요원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1. 국군조직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군의 업무
2.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교도대의 업무
3. 전투경찰대설치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의 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업무로써 대인용 무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제33조의19(대체복무시설의 지정등) ①중앙위원회는 매년 다음해의 대체복무요원의 예상소요인원·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대체복무시설등의 종류를 정하여 이를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정한 통보를 받은 지방위원회는 대체복무요원의 희망·자질·학력·적성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시설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지방위원회는 대체복무시설등의 지정시에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정한 대체복무시설등이 지방위원회가 정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위원회는 대체복무시설등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규정한 대체복무시설등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제3항에 규정한 취소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0(대체복무요원의 배정인원 결정) 지방병무청장은 제33조의19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체복무시설등으로부터 다음해의 소요인원을 요청받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제33조의21(대체복무요원의 소집) ①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제33조의16제1항에 의하여 정해진 복무분야에 따라 소집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그 밖에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2(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대체복무요원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정한 복무기간의 1.5배를 복무하여야 한다.

②대체복무요원이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기간에서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복무한다.

③제33조14제4항 단서 또는 제33조의15제5항에 의하여 비집총복무 결정 또는 교육소집면제결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규정한 복무기간에서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복무한

다.

④대체복무요원이 복무를 마친 때에는 그 소집을 해제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제33조14제4항 단서 또는 제33조의15제5항에 의하여 비집총복무결정 또는 교육소집면제결정을 받은 자가 복무를 마친 경우에도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⑤제33조의23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⑥제30조제2항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제18조제4항의 규정은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⑦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의 계산 및 소집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3(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①대체복무요원을 배정받은 대체복무시설등의 장은 제33조의16에 의하여 선정된 대체복무분야에 대체복무요원을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대체복무요원은 그 복무 및 복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대체복무시설등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②대체복무시설등의 장 또는 이를 관할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대체복무요원은 복무시간외에는 지방병무청장의 지휘·감독 하에

군부대의의 시설에서 단체숙박생활을 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택 또는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개별 또는 소규모의 숙박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근무지역의 대체복무요원의 수가 단체숙박생활을 할 만큼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수행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단체숙박생활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대체복무시설등의 장 또는 이를 관할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직무수행 및 생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생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4(대체복무요원의 신상이동통보) ①대체복무요원을 배정받은 대체복무시설등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대체복무시설등을 관할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병무청장 및 지방위원회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복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의2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처분된 때

3. 제33조의23제3항에 규정한 자택에서 숙박생활을 하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4. 복무하고 있는 대체복무시설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

5.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지방위원회는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33조의19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기관등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새로 지정된 대체복무기관에게 소요인원을 신청받아 대체복무요원의 배정인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인원을 배정받은 대체복무기관등의 장은 제33조의16에 규정된 복무분야에 부합하는 업무와 근무지를 지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을 복무하게 하여야 하고,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의25(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①제33조제1항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준용한다.

②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소집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22제1항에 규정한 복무기간에서 대체복무요원으로 실제로 복무한 기간을 뺀 잔여복무기간을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산업기능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산업기능요원”을 “산업기능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산업기능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43조중 “및 산업기능요원”을 “·산업기능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개정한다.

제4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9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4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병력동원훈련 소집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대체복무시설등에서 사회복지관련업무 또는 공익관련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관한 대체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4조 단서에 의해 병력동원소집대상에서 제외된 자
제55조제1항 본문중 “보충역”을 “대체복무요원을 제외한 보충역”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2국민역”을 “제2국민역(제33조의22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을 “보충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또는
제2국민역(제33조의2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5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체복무를 마친 자가 제1항단서 및 제2항본문에 의하여 교육소
집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7조제1항중 “공익근무요원”을 “공익근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
로 한다.

제63조제2항중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 공익근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체복무요원은 제33조의22제4항을 준용한다.

제7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
무”를 “현역병입영·공익근무요원소집 또는 대체복무요원소집의무”으
로 하고, 동항제1호중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 공익근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73조중 “산업기능요원”을 “산업기능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75조제4항 및 제75조의2제1항중 “공익근무요원”을 “공익근무요원 또

는 대체복무요원”으로 각각 한다.

제76조제1항제3호중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군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대체복무요원 복무”로 한다.

제83조제2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3조의17 또는 제33조의21의 규정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되거나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제2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3조의1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복무신청을 한 자로서 중
양위원회의 재심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제2항중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주 또는 대체복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40
조·제33조의24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정한다.

제88조제1항제2호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공익근무요원·대체복무요
원 소집”으로 한다.

제89조중 “공익근무요원”을 “공익근무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호중 “공익근무요원”을 “공익근무요원·대체복무요원”으
로, “이탈”을 “이탈(대체복무요원은 단체숙박생활에서 이탈한 것을 포
함한다)”로 각각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요원으

로 편입한 자

제91조중 “또는 치과의사로서”를 “· 치과의사 또는 종교인 등으로서”로, “연기 또는 면제”를 “연기· 변경(대체복무요원으로의 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면제”로 각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복무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산하의 지방위원회에 대체복무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33조의12제3항은 준용된다.

1.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종전의 병역법 제88조 또는 군형법 제44조를 위반한 사람
3. 보충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제3조(보충역 복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지방위원회 및 중앙위원회는

부칙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자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3조의14제4항 단서에 불구하고,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하고는 대체복무요원편입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자는 제33조의22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에서 실제로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복무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자의 복무기간이 제33조의22제1항이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충역의 복무기간에서 실제로 복무한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③제2항에 정한 기간의 복무를 마친 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제4조(형의 집행등에 관한 특례) ①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종전의 병역법제88조 또는 군형법 제44조를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체복무신청을 하여 심사 결과 대체복무요원편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이 법에 의한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이미 집행된 형기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②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병역법 제88조 또는 군형법 제44조를 위반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체복무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재판은 중앙위원회의 재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신·구조문대조표

③제2항에 정한 자가 대체복무요원편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고, 미결구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예비군의대체복무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군에 편성된 자 중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병역법 제33조의1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복무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법 제33조의15에 규정한 중앙대체복무위원회의 재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의 효력은 정지된다.

②예비군의 대체복무에 관해서는 병역법 제33조의2 내지 제33조의10, 제33조의13 내지 제33조의16, 제33조의18 내지 제33조의20을 준용하고 그 외 예비군의 대체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 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신설>	第2條(定義) ①----- ----- -- 1. ~ 9. (현행과 같음) 9의 2. 대체복무요원이라 함은 제33조의14제4항 및 제33조의15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복무요원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적 단체 또는 시설(이하 “대체복무시설등”이라 한다)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또는 여성 등의 보호·치료·요양·훈련·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이하 “사회복지관련업무”라 한다) 또는 소방·의료·재난 또는 구호 등의 업무(이하 “공익관련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10. ~ 15. (생략)

第5條(兵役의 종류) ①병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1. ~ 2. (생략)

3. 보충역:징병검사(徵兵檢査)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現役兵入營對象者)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신설>

자를 말한다.

10. ~ 15. (현행과 같음)

第5條(兵役의 종류) ①-----

1. ~ 2. (현행과 같음)

3. -----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요원-----

-----사람(대체복무

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은 제외한다.)-----

제1절의2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신설>

제33조의2(대체복무위원회) 제

2조제1항제9호의2에 정한 대체복무요원의 판정을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지방병무청에 지방대체복무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3조의3(중앙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자로서 철학·종교학·심리학·법학·사회학 또는 정치학 등을 전공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 종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제2조에 정한 단
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4. 4급 이상의 관계공무원 또
는 공무원이었던 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
방부 장관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
국을 둔다.

⑤ 중앙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4(중앙위원회의 업무)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지
방위원회의 기각 및 각하결
정에 대한 재심사

2. 제33조의19제1항에 규정
한 다음해의 대체복무요원
의 예상 소요인원·복무분
야·복무형태·대체복무시

<신 설>

<신 설>

설의 종류에 대한 결정

3.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제안

제33조의5(중앙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
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
는 국방부장관은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
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
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
로이 개시된다.

④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
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
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에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6(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신 설>

제33조의7(위원의 제척)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신청인인 경우

신청인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신청인과 친족·호주·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신청인의 참고인으로 된 경우

<신 설>

제33조의8(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33조의9(지방위원회의 구성) ①지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제33조의3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한다.

④제33조의3제4항 내지 제5

<신 설>

항, 제33조의5 내지 8은 지방
위원회에 준용한다.

제33조의10(지방위원회의 업
무)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3조의12제1항, 제2항에
규정한 대체복무신청에 대
한 판정
2. 기타 이 법이 규정한 대
체복무신청에 대한 판정
3.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
의4제1항에 규정한 대체복
무신청에 대한 판정
4. 제33조의19 제2항에 규정
한 대체복무시설의 지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수행

<신 설>

제33조의11(고지의무) 지방병
무청장은 제11조에 정한 징
병검사시에 병역의무자에 대
하여 대체복무제도의 취지,
대체복무신청절차 및 기간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12(대체복무신청) ①

제1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
역 판정을 받은 자 중 종교
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징총이 수반되는 병
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대체복무신청인”
이라 한다)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체
복무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지방병무청 산하의 지
방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대체복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현역병(제21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보충역(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에 한
한다)으로 복무 중인 자도 제
1항에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
고 대체복무신청을 할 수 있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 복무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중앙위원회의 재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입영 또는 소집은 연기된다.

1.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현역병입영
2. 제22조제1항에 규정한 현역병입영
3. 제29조제1항에 규정한 공익근무요원의 소집
4. 제55조제1항에 규정한 교육소집(공익근무요원에 한한다)

제33조의13(조사) ① 지방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영대상자들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입영대상자들 본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는 일

<신 설>

2. 입영대상자들 본인 또는 참고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

3.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는 일

4.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

5.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②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의14(결정) ① 결정은 서면으로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대체복무신청인의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1. 신청이 제33조의12제1항에 정한 기간을 지난 경우

<신 설>

2. 신청이 제33조의12제1항
에 정한 방식에 위배된 경
우

③지방위원회는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
청을 기각한다.

④지방위원회는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인을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
하기로 결정(이하 “대체복무
요원편입결정”이라 한다)하
고, 신청인의 희망·자질·
학력·적성을 고려하여 적합
한 대체복무분야를 복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
복무신청인이 현역병 또는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복
무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복
무 중인 자로써 복무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현역
병으로 복무 중인 자에 대해
서는 집총이 수반되지 않는
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결
정(이하 “비집총복무결정”이

라 한다)하여야 하고 보충역
으로 복무 중인 자에 대해서
는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의 면
제를 결정(이하 “교육소집면
제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
다.

⑤제4항단서에 의한 비집총
복무결정 또는 교육소집면제
결정을 받은 자도 이 법에
의한 대체복무요원으로 분
다.

⑥제1항의 결정은 신청을 받
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
야 한다.

⑦지방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
다.

<신 설>

제33조의15(재심사) ①지방위
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
체복무신청인은 결정서 정본
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

식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정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1. 제33조의14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거나 방식에 위반한 경우

3. 제33조의14제4항에 정한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한 경우

④ 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내린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⑤ 제33조의13, 제33조의14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은 중앙위원회에 준용한다.

<신 설>

제33조의16(대체복무분야의 선정) ① 제33조의14제4항 및 제33조의15제5항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 편입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체복무분야를 선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기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분야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17(대체복무요원의 편입) 제33조의14제4항, 제33조의15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복무요원편입결정을 받은 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의 병적은 보충역으로 변경된다.

<신 설>

제33조의18(대체복무요원의 복
무분야 및 대체복무시설) 대
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시설
등에서 사회복지관련업무 또
는 공익관련업무를 보조·지
원한다. 다만, 대체복무요원
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아
니된다.

1. 국군조직법제2조의 규정
에 의한 국군의 업무
2.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
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경
비교도대의 업무
3. 전투경찰대설치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의
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
는 업무로써 대인용 무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수행하여
야 하는 업무

<신 설>

제33조의19(대체복무시설의 지
정등) ①중앙위원회는 매년
다음해의 대체복무요원의 예

상소요인원·복무분야·복무
형태 및 대체복무시설등의
종류를 정하여 이를 지방위
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정한 통보를 받은
지방위원회는 대체복무요원
의 희망·자질·학력·적성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시설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지방
위원회는 대체복무시설등의
지정시에 일정한 조건을 부
과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정한 대체복무시
설등이 지방위원회가 정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
우에는 지방위원회는 대체복
무시설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2항에 규정한 대체복무
시설등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제3항에 규정한 취소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신 설>

제33조의20(대체복무요원의 배

정인원 결정) 지방병무청장은 제33조의19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체복무시설등으로부터 다음해의 소요인원을 요청받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신 설>

제33조의21(대체복무요원의 소집) ①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제33조의16제1항에 의하여 정해진 복무분야에 따라 소집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그 밖에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의22(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대체복무요원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정한 복무기간의 1.5배를 복무하여야 한다.

②대체복무요원이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기간에서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복무한다.

③제33조14제4항 단서 또는 제33조의15제5항에 의하여 비집중복무결정 또는 교육소집면제결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규정한 복무기간에서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복무한다.

④대체복무요원이 복무를 마친 때에는 그 소집을 해제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제33조14제4항 단서 또는 제33조의15제5항에 의하여 비집중복무결정 또는 교육소집면제결정을 받은 자가 복무를 마친 경우에도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⑤제33조의23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⑥제30조제2항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제18조제4항의 규정은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⑦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의 계산 및 소집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의23(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①대체복무요원을 배정받은 대체복무시설등의 장은 제33조의16에 의하여 선정된 대체복무분야에 대체복무요원을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대체복무요원은 그 복무 및 복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대체복무시설등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원수행으로 본다.

②대체복무시설등의 장 또는

이를 관할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대체복무요원은 복무시간 외에는 지방병무청장의 지휘·감독 하에 군부대외의 시설에서 단체숙박생활을 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택 또는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개별 또는 소규모의 숙박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근무지역의 대체복무요원의 수가 단체숙박생활을 할 만큼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수행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단체숙박생활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대체복무시설등의 장 또는 이를 관할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직무수행 및 생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생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4(대체복무요원의 신상이동통보) ① 대체복무요원을 배정받은 대체복무시설등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대체복무시설등을 관할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병무청장 및 지방위원회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복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의2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 처분된 때

3. 제33조의23제3항에 규정한 자택에서 숙박생활을 하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4. 복무하고 있는 대체복무시설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

5.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지방위원회는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33조의19제2항에 따라 대체복

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민간의 의료시설
에서 가료한다.

第75條의2(災害등에 대한 補償) ①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로 복무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
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때
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
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
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
당하는 금액은 이를 지급하
지 아니한다.

② ~ ③ (생략)

第83條(戰時特例) ① (생략)

② (생략)

1. ~ 3. (생략)

4.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

第75條의2(災害등에 대한 報償) ①
-----공익근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83條(戰時特例)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에 의한 보충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역
중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
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
의 현역병입영대상으로의, 교
육소집을 마친 사람은 병력
동원소집대상으로의 전환

<단서 신설>

5.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연기
및 징집·소집연기의 정지

<단서 신설>

5의2. ~ 9. (생략)

③ (생략)

다만 제33조의17 또는 제33
조의21의 규정에 따라 대체
복무요원으로 편입되거나 소
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5. -----

다만, 제33조의12제1항의 규
정에 따라 대체복무신청을
한 자로서 중앙위원회의 재
심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
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5의2.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第84條(身上移動通報不履行等)

① (생략)

②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

第88條(入營의 기피) ① (생략)

1. (생략)

2. 공익근무요원소집은 3일

3. (생략)

② (생략)

第89條(公益勤務要員의 代理服務)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89條의2(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이탈등) (생략)

第84條(身上移動通報不履行等)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주 또는 대체복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제33조의24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③ (현행과 같음)

第88條(入營의 기피)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공익근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89條(公益勤務要員의 代理服務) 공익근무요원·대체복무요원

제89조의2(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이탈등) (현행과 같음)

1.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통산 4회이상 경고처분된 사람

2. ~ 3. (생략)

<신설>

第91條(虛偽證明書등의 발급)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1. 공익근무요원·대체복무요원

이탈(대체복무요원은 단체숙박생활에서 이탈한 것을 포함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한 자

第91條(虛偽證明書등의 발급) 치과의사 또는 종교인 연기·변경(대체복무요원로서의 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면제

예산명세서

1. 총 소요예산 : 238억원

2. 산출근거

가. 중앙대체복무위원회의 설치 (안제33조의2, 제33조의3) : 17억원

- 상임위원 보수(4인) : 2억(/년)
- 사무국 운영비 : 15억(/년)
 - 보수(10인) 5억원, 기본경비 10억

나. 10개 지방병부청별 지방대체복무위원회의 설치 (안제33조의2, 제33조의9) : 150억원

- 10개소 사무국운영비 : 150억(/년)
 - 1개소 사무국 운영비 : 15억(보수(10인) 5억원, 기본경비 10억)

다. 대체복무요원의 보수 및 비용(안제33조의23제3항) : 36억원

- 인원 : 1,000여명 * 360만원(/년) = 36억원(/년)

라. 단체숙박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제33조의23제2항) : 35억원

- 설치비 : 10개소 * 3억 = 30억원
- 운영비 : 10개소 * 5천만원 = 5억원(/년)

□ 좌석 배치표

